노원구보

노원구 홈페이지 | www.nowon.kr

제2346호 2026. 10. 1.(목)



노원구 전경

※ 노원구보 게재를 의뢰하는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 구보의 게재내용은 발행당일 노원구 홈페이지 게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owon.kr (노원소개→알림마당→노원구보)>
◎ 구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일 때에는 다음날 발행합니다.
◎ 구보는 서울특별시노원구구보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발행일 3일전까지 접수합니다.
◎ 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2116-3414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행인 : 노 원 구 청 장
편집인 : 미디어홍보담당관 정 윤 경
전 화 : 02-2116-3414

차 례

고 시

○ 제2026-79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3

공 고

○ 제2026-1617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4
○ 제2026-1622호 서울 수락산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11
○ 제2026-1631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4
○ 제2026-1633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6
○ 제2026-1634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7
○ 제2026-1635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66
○ 제2026-1638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4
○ 제2026-1639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98
○ 제2026-1642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 104
○ 제2026-1664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판단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109

인 사

고 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6-79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노 원 구 청 장

○ 폐지 대상 도로명주소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1	중계동 19-47	중계로6나길 39	2010. 9. 6.	2026. 10. 1.	철거된 건축물의 건물번호 폐지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2116-3611)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에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공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617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국기판매대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완화하여, 국기 판매 수요 등을 고려한 탄력적인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기판매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을 완화함 (안 제7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단체 또는 개인)는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02-2116-3133, FAX: 02-2116-4609, E-mail: seo2023@nowon.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기판매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하여, 국기 판매 수요 등을 고려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기판매대의 설치·운영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함 (안 제7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제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2)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규제사전심사 : 대상 아님

4) 위원회 관련 사전협의 : 대상 아님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① ---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5조(국기 보급 확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들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국기선양관련단체, 국기판매업체 등과 협의하여 소속기관의 민원실에 국기판매대를 설치·운영하거나 구내매점에서 국기를 판매하도록 하고, 백화점·편의점·문구점 등 상업시설에서도 국기를 판매할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

의 견 제 출 서

예 고 내 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노원구공고 제2026-1622호

서울 수락산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서울 수락산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 등에 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요청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노 원 구 청 장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명 칭	위 치	면 적	지구지정 제안자 명칭(성명) 및 주소
서울 수락산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101-1번지 일원	27,921㎡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성훈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관련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 열람기간 : 2026. 10. 1. ~ 2026. 10. 15.(14일간)
○ 열람장소 : 노원구청 도시관리과, 서울도시공간포털
○ 열람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게재 생략)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 10. 1. ~ 2026. 10. 15. (14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직접, 온라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열람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장소
(직접 제출) 열람장소에 제출
(온라인 제출) 서울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에서 작성
(우편 제출)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3층 도시관리과
(팩스 제출) FAX : 02-2116-4633
※ 본 열람내용은 최종 결정 내용이 아니며, 추진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4. 의견청취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서울 수락산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사업예정지는 의견 청취 공고일로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위제한이 적용되며,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

* 구청장은 허가 전 미리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인공 시설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행위
4) 토석의 채취
 :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의 분할·합병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공공주택 특별법」제1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4) 주택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5) 주택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6)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 (경작지에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도시관리과(☎02-2116-3864), 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도심복합사업처 도시지정1팀(☎02-6400-54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지구명	서울 수락산역 인근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구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101-1번지 일원	
공람기간	2026. 10. 1. 2026. 10. 15.	
의 견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서울 수락산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631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노원구립 점프의 운영 활성화 및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현행 조례상 매주 월요일로 지정된 정기 휴관일을 삭제하여 운영일을 확대하고, 평일 키즈존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민간 시장과의 마찰을 예방하는 한편,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여 학교·학원·기업 등 단체 이용객 유치 촉진과 구립 시설로서의 공익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기 휴관일 삭제 및 휴관일 정비(안 제3조)

나. 키즈존 평일 이용료 현실화(안 별표1)

다. 단체 감면 기준 개편(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여가도시과장, 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51, ☎ : 02-2116-0622, FAX : 02-2116-4668, E-mail : cheol@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노원구립 점프의 운영 활성화 및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현행 조례상 매주 월요일로 지정된 정기 휴관일을 삭제하여 운영일을 확대하고, 평일 키즈존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민간 시장과의 마찰을 예방하는 한편,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여 학교·학원·기업 등 단체 이용객 유치 촉진과 구립 시설로서의 공익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기 휴관일 삭제 및 휴관일 정비(안 제3조)

나. 키즈존 평일 이용료 현실화(안 별표1)

다. 단체 감면 기준 개편(안 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53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3) 규제사전심사 : 대상아님

4) 위원회 관련 사전협의 : 대상아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험시설 이용료 기준(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종 류 별	기준시간	이용료
체험시설 (인도어카트 제외)	평일	1시간	13,000원 이내
	주말, 휴일	1시간	15,000원 이내
	추가요금	10분당	2,000원 이내
키즈존	평일	1시간	10,000원 이내
	주말, 휴일	1시간	10,000원 이내
	추가요금	10분당	1,500원 이내
인도어카트	평일	1회당	15,000원 이내
	주말, 휴일	1회당	18,000원 이내
비고	-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이용 인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영·유아 보호자, 장애 동행보호자 등은 시설 이용료의 범위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18:00 이후 이용료는 20%이내 할증 가능		

[별표 3]

체험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제7조 관련)

구 분	대 상	비고
전액 감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목적으로 직접 이용하는 경우 2. 체험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0%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9「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0.「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1.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 지참 (확인서, 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30% 감면	1. 노원구민[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노원구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체험시설 이용일을 기준으로 구 소재 초·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다자녀 가정 4. 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5. 시설의 이용 활성화 및 전략적 마케팅을 위하여 학교, 학원, 기업·단체 등을 유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감면	1. 30인 이상 단체	

신·구조문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제3조(이용시간 및 휴관) ② 체험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한다.
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휴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날</td><td>제3조(이용시간 및 휴관) ② ----------
1. ----------
2. <삭제>
3. ----------</td></tr>
<tr><td>[별표1]체험시설 이용료 기준
<table><tr><th>구 분</th><th>종 류 별</th><th>기준시간</th><th>이용료</th></tr><tr><td rowspan="3">체험시설
(인도어카트 제외)</td><td>평일</td><td>1시간</td><td>13,000원 이내</td></tr><tr><td>주말, 휴일</td><td>1시간</td><td>15,000원 이내</td></tr><tr><td>추가요금</td><td>10분당</td><td>2,000원 이내</td></tr><tr><td rowspan="3">키즈존</td><td>평일</td><td>1시간</td><td>8,000원 이내</td></tr><tr><td>주말, 휴일</td><td>1시간</td><td>10,000원 이내</td></tr><tr><td>추가요금</td><td>10분당</td><td>1,500원 이내</td></tr><tr><td rowspan="2">인도어카트</td><td>평일</td><td>1회당</td><td>15,000원 이내</td></tr><tr><td>주말, 휴일</td><td>1회당</td><td>18,000원 이내</td></tr></table></td><td>[별표1]체험시설 이용료 기준
<table><tr><th>구 분</th><th>종 류 별</th><th>기준시간</th><th>이용료</th></tr><tr><td rowspan="3">체험시설
(인도어카트 제외)</td><td>평일</td><td>1시간</td><td>13,000원 이내</td></tr><tr><td>주말, 휴일</td><td>1시간</td><td>15,000원 이내</td></tr><tr><td>추가요금</td><td>10분당</td><td>2,000원 이내</td></tr><tr><td rowspan="3">키즈존</td><td>평일</td><td>1시간</td><td>10,000원 이내</td></tr><tr><td>주말, 휴일</td><td>1시간</td><td>10,000원 이내</td></tr><tr><td>추가요금</td><td>10분당</td><td>1,500원 이내</td></tr><tr><td rowspan="2">인도어카트</td><td>평일</td><td>1회당</td><td>15,000원 이내</td></tr><tr><td>주말, 휴일</td><td>1회당</td><td>18,000원 이내</td></tr></table></td></tr>
</table>

[별표3]체험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

구 분	대 상
30% 감면	1. 노원구민[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노원구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체험시설 이용일을 기준으로 구 소재 초·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다자녀 가정 4. 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5.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3]체험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

구 분	대 상
30% 감면	1.---------- 2.---------- 3.---------- 4.---------- 5. 시설의 이용 활성화 및 전략적 마케팅을 위하여 학교, 학원, 기업·단체 등을 유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Ⅰ.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해당 개정안은 운영·관리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은 없음

4. 작성자

○ 여가도시과 김정철(02-2116-0622)

< 관계법령 >

□ **「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오락 시설, 교통시설, 그 밖의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의 견 제 출 서

예 고 내 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633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고, 위원회 명칭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며, 위촉 위원의 다양성을 강화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구민의 환경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 정비 (안 제1조)

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 (안 제9조, 안 제3장 제목,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다. 위원 위촉 시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위촉 위원의 다양성 확대 (안 제12조제5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 탄소중립도시과장, 주소 :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55 MG노원빌딩 9층 ☎ : 2116-3202, FAX : 2116-4611, email : ruby0909@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고, 위원회 명칭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며, 위촉 위원의 다양성을 강화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구민의 환경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 정비 (안 제1조)

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 (안 제9조, 안 제3장 제목,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다. 위원 위촉 시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위촉 위원의 다양성 확대 (안 제12조제5항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3) 규제사전심사 : 대상아님

4) 위원회 관련 사전협의 : 대상아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하고,”를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으로, “강화하고”를 “강화하며”로,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을 “통해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서울특별시 노원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풍부한”을 “풍부한 사람 및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2제1항 본문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본문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 강화하며 ---------- 통해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①·② (생 략) ③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제11조(추진상황 점검)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추진상황 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대응

	위원회---.
제3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3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제12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 ---------- ----------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 ---------- ---------- ---------- ---------- 풍부한 사람 및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비용추계서 작성)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소요비용 없음

4. 작성자

탄소중립도시과 김혜진(02-2116-3202)

〈 관계법령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1. 11.>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2025. 11. 11.>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4항(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 - 1634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및 주민총회·자치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목적·기능 및 위원의 해촉 근거 정비 (안 제1조, 제5조 및 제13조)

나. 주민자치회 및 자치계획의 정의, 운영원칙과 자치회관 기능 관련 용어를 정

비하고, 위원 정수・자격・선정기준 보완(안 제2조, 제3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25조)

다. 적용기간이 지난 위원 임기 특례 삭제(안 제10조의2)

라.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및 대우를 정비하고 자치회장 후보자의 운영계획 발표 근거 마련(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

마. 감사 결과 제출기한 단축, 특별위원회・임원회의・민관협력회의의 운영 근거 마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바. 주민총회 개최 및 결정사항, 자치계획의 수립·제출 및 지원 절차 정비(안 제20조 및 제21조)

사. 온라인 주민참여 및 관계기관 협력 근거 마련(안 제35조 및 제36조)

아. 보조금 관련 법령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근거 마련(안 제37조, 제38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단체 또는 개인)는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02-2116-3137, FAX: 02-2116-4609, E-mail: 2009022897@nowon.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및 주민총회·자치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목적·기능 및 위원의 해촉 근거 정비(안 제1조, 제5조 및 제13조)

나. 주민자치회 및 자치계획의 정의, 운영원칙과 자치회관 기능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위원 정수·자격·선정기준 보완(안 제2조, 제3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25조)

다. 적용기간이 지난 위원 임기 특례 삭제(안 제10조의2)

라.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및 대우를 정비하고 자치회장 후보자의 운영계획 발표 근거 마련(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

마. 감사 결과 제출기한 단축, 특별위원회·임원회의·민관협력회의의 운영 근거 마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바. 주민총회 개최 및 결정사항, 자치계획의 수립·제출 및 지원 절차 정비(안 제20조 및 제21조)

사. 온라인 주민참여 및 관계기관 협력 근거 마련(안 제35조 및 제36조)

아. 보조금 관련 법령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근거 마련 (안 제37조, 제38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7조의2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3) 규제사전심사 : 대상아님

4) 위원회 관련 사전협의 : 대상아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를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실행하는 주민자치 및 동 지역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주민자치회 활동”을 “주민자치 활동”으로, “주민 공론장”을 “주민공론장”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를 “동별 자율적 운영”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를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6조 중 “50명 이내”를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에 따른 추천일 또는 공개 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를 “제8조에 따른 공개 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로 한다.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별 10명 이하”를 “10명 이하”로 한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주민자치회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장년층,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민자치회의 의결 사항 준수 및 주민총회 결과 존중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법 제40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무보수 명예직”을 “명예직”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주민자치회 위원 스스로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3.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4.「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거나, 「지방자치법」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날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連書)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자치회장 후보로 추천된 위원은 자치회장 선출 전에 주민자치회의 운영 계획 및 활동 방향 등을 발표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중 “3개월”을 “1개월”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동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에 소재한 사업장·학교·기관의 임직원 또는 해당 동에서 지역사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제3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무기명투표로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⑤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전체회의, 분과회의, 분과위원장회의”를 “전체회의, 분과회의, 특별위원회 회의, 임원회의 및 민관협력회의”로 한다.

같은 조 제4항 중 “분과위원장회의는 각 분과위원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임원회의는 자치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회의”로 한다.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민관협력회의는 주민자치회 임원과 동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회의로 자치회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연 1회 개최하며”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자치계획
4.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의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추진 등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지역발전 및 활성화 계획(중장기 계획 포함 가능)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사업계획
5.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중장기 계획 포함 가능)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수립한 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중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한다.

제35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동의 주요 시책 및 예산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주민자치회에 제공할 수 있다.
같은 조 제9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의 주민조직 및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돌봄(통합돌봄 포함), 마을환경개선, 재난안전, 생명보호(자살예방, 고독사 방지)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35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홍보용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위원 모집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홍보하는 경우

2. 자치계획 수립·실행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상정 안건 홍보, 투표 참여 독려 등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법」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재임 중인 주민자 치회 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③ 제2항의 위원이 임기 만료 후 연임하거나 새로 위촉되는 경우에는 개정 제7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7조의2---------- ---------- ---------- ---------- ---------- ---------- ----------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생 략)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 자치	제2조(정의) ---------- ----------. 1. ---------- ---------- --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 2. (현행과 같음) 3. ---------- ---------- ---------- 주민자치 ----------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 주민공론장--------.
4.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실행하는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4. --------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 주민자치 및 동 지역발전, 민관협력 등----------.
5.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삭 제>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운영원칙)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3. --------- 운영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법」제17조의2제3항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 정수) 주민자치회는	제6조(위원 정수) ----------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 포함한 30명 이상 ----------.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일 또는 공개 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주민자치학교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따른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삭 제>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삭 제>
4. (생 략)	2.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로부터 2년간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 ----------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선정과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집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주민자치회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전체 주민자치회 위원의 10분의 6 이상 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 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전체 주민자치회 위원의 10분의 4 이내	제8조(위원의 선정과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주민자치회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장년층,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은 제1항에 따라 공개 추첨 방식으로 하며, 제1항 각 호별 10명 이하의 예비 후보자의 순위를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다만, 추첨 대상 인원이 제6조에서 정한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 추첨하지 않고 전원 선정한다.	② ---------- ---------- 하며, 10명 이하 ---------- ---------- ----------. ---------- ---------- ---------- ----------.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위원 임기에 대한 한시적 특례) 조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2월 3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에 한정하여 그 해당 임기 만료일을 2025년 2월 20일자로 한다.	<삭 제>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주민자치회의 의결 사항 준수 및 주민총회 결과 존중
2. ~ 4. (생 략)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라 정치적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18조에 따른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대우) ---------- 명예직----------. ----------.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민자치회 위원을 해촉해야 하며,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
5.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삭 제>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날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5호 또는 제6호의 경우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또는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③ 제1항 각 호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날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連書)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 ⑥ (생 략)	제15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자치회장 후보로 추천된 위원은 자치회장 선출 전에 주민자치회의 운영 계획 및 활동 방향 등을 발표할 수 있다.
제17조(감사) ① (생 략)	제17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의결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며, 주민자치회는 그 결과를 회계연	② ---------- ---------- ----------

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총회에서 보고하며,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 1개월 ---------- ---------- ---------- ---------- --.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활동 강화와 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 -----.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동 주민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은 해당 분과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동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에 소재한 사업장·학교·기관의 임직원 또는 해당 동에서 지역사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

	체에 소속된 사람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제3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무기명 투표로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⑤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 설>	⑥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전체회의, 분과회의, 분과위원장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항과 같이 운영한다.	제19조(회의) ① ---------- ---------- 특별위원회 회의, 임원회의 및 민관협력회의--------.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분과위원장회의는 각 분과위원장이 참석하는 회의로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임원회의는 자치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 ---------- ----------.
<신 설>	⑤ 민관협력회의는 주민자치회 임원과 동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회의로 자치회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⑤ (생 략) <신 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⑧·⑨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제20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생 략) <신 설> 2. (생 략) <신 설> 3.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편성안 등 4. 그 밖에 지역현안, 주민자치,	제20조(주민총회) ① ---------- 1회 이상 ----------. ----------. ----------. ② ----------. 1. (현행과 같음)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삭 제> 5. - 밖의 ----------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 ---- 추진 등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제21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① ---------- 주민-------- ----------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신 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신 설>	2. 동 지역발전 및 활성화 계획(중장기 계획 포함 가능)
<신 설>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신 설>	4.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사업계획
<신 설>	5.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신 설>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중장기 계획 포함 가능)
② 주민자치회는 전체회의 의결로 자치계획을 주민총회에 입안하며, 주민총회는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계획을 결정한다. 다만, 안건이 다수인 경우에는 다득표순으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동장은 자치계획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수립한 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3. 분과별 사업계획 4.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5. 그 밖의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삭 제>
제23조(자치계획의 효력) ① 구청장은 자치계획을 해당 동 주민들이 합의한 공식적인 종합계획으로 인정하고,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한다.	<삭 제>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획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③ 삭제	
제25조(기능) ① 자치회관은 주민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5조(기능) ① ----------. 1.·2. (현행과 같음)
1.·2. (생 략)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	3. ------- 작은도서관----------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 ⑤ (생 략)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동의 주요 시책 및 예산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주민자치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⑥ (생 략)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제6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⑨ 제8항----------.
제3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생 략)	제3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의 주민조직 및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돌봄(통합돌봄 포함), 마을환경개선, 재난안전, 생명보호(자살예방, 고독사 방지)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37조(감독) ①·② (생 략)	제37조(감독)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주민자치회는 제35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신 설>	제38조의2(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홍보용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위원 모집을 위해 주민자치

	회를 홍보하는 경우 2. 자치계획 수립·실행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상정안건 홍보, 투표 참여 독려 등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7조의2

제1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이 위촉한다.

⑤ 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⑥ 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14.]

[시행일: 2026. 10. 15.] 제17조의2

의 견 제 출 서

예 고 내 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 - 1635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방식을 공개모집으로 일원화하는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 모집 절차와 관련 서식 등 시행규칙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방식을 공개모집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추천 관련 규정 수정(안 제2조) 및 추천서 서식 삭제(별지 제3호서식)

나.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 모집 공고문, 위원 신청서, 위촉·해촉 관리대장, 인적사항 공고, 연임 신청서 및 자치회관 반기별 운영결과 보고서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단체 또는 개인)는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02-2116-3137, FAX: 02-2116-4609, E-mail: 2009022897@nowon.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방식을 공개모집으로 일원화하는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 모집 절차와 관련 서식 등 시행규칙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방식을 공개모집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추천 관련 규정 수정(안 제2조) 및 추천서 서식 삭제(별지 제3호서식)

나.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 모집 공고문, 위원 신청서, 위촉·해촉 관리대장, 인적사항 공고, 연임 신청서 및 자치회관 반기별 운영결과 보고서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8조, 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3) 규제사전심사 : 대상아님

4) 위원회 관련 사전협의 : 대상아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서울특별시노원구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위원 신청서·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를 “위원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노원구○○○동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주민을 대표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 **접수장소 :** ○○○ 동 주민센터 (연락처 : 담당직원 :)

3. **자격요건 :**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주민자치학교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가.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4. **구비서류 :** 위원 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5.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의 의무 수행

6.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 위원은 명예직이며, 임기는 2년(두 차례 연임 가능)

7. **문의사항 : ○○동주민센터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장

[별지 제2호서식]

○○ 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직 업				
주 소			**성별**	
3년 이내 마을 활동 경험 (경력)	1. 주민자치회	2. 마을공동체공모사업		3.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
	□	□		□
	4. 그 외 단체 및 주민모임/기타 ()			5. 경험 없음
	□			□
신청사유	주민자치회 활동을 결심하게 된 계기나 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 주세요.			

※ 신청서 접수 후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충족하고,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선정되어야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됩니다.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이에 따라 ○○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동 주민자치회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예 □ 아니오 □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집 주소, 성별, 3년 이내 마을활동 경험, 직업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를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부터 임기 만료 후 2년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사업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이용,제공)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집 주소, 성별, 3년 이내 마을활동 경험, 직업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본인 확인, 연령 및 거주지역 확인, 위원 선정·위촉 및 관리, 안내사항 전달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부터 임기 만료 후 2년까지
사진·영상 및 음성정보	회의 및 행사의 증빙 또는 주민자치회 사업 및 실적 홍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부터 임기 만료 후 2년까지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주민자치회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정보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선택) 예 □ 아니오 □

제공받는 자	노원구, ○○○동, ○○○동 주민자치회, 노원구 주민자치지원단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본인 확인, 연령 및 거주지역 확인, 위원 선정·위촉 및 관리, 안내사항 전달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집 주소, 성별, 사진, 3년 이내 마을활동 경험, 직업, 사진·영상 및 음성정보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로부터 임기 만료 후 2년까지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주민자치회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정보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5호서식]

노원구 ○○동 주민자치회 위원 위·해촉사항 관리 대장

연번	직위	성명	사진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연락처	위촉 및 해촉 사항			비고 (직업)
								위촉일	해촉일	해촉 사유	

① 위 촉 일 : 구청장이 위촉한 날로 기재

② 해촉사유 :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

[별지 제6호서식]

노원구 ○○○동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서식)

□ 현 황

명칭	주민자치회장 (성명)	위원	비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주민자치회		명 (남: 명, 여: 명)	

□ 인적사항

연번	직위	성명	성별	최초 위촉일자	비고
예시	회장	노 * 구	여	2025.2.21.	
	부회장				
	부회장				
	감사				
	감사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 주민자치회의 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합니다.

20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장(직인)

[별지 제6호의2서식]

○○동 주민자치회 위원 연임 신청서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		성별	
직 업			
주 소			
최초 위촉일	20○○년 ○월 ○일	임기 만료 예정일	20○○년 ○월 ○일
연임 임기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분과 활동 이력			

※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 자격을 갖추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 조례 제7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원 자격이 제한되는 사람은 연임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동 주민자치회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예 □ 아니오 □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집 주소, 성별, 3년 이내 마을활동 경험, 직업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를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부터 임기 만료 후 2년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사업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이용,제공)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집 주소, 성별, 3년 이내 마을활동 경험, 직업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본인 확인, 연령 및 거주지역 확인, 위원 선정·위촉 및 관리, 안내사항 전달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부터 임기 만료 후 2년까지
사진·영상 및 음성정보	회의 및 행사의 증빙 또는 주민자치회 사업 및 실적 홍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부터 임기 만료 후 2년까지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주민자치회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정보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선택) 예 □ 아니오 □

제공받는 자	노원구, ○○○동, ○○○동 주민자치회, 노원구 주민자치지원단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본인 확인, 연령 및 거주지역 확인, 위원 선정·위촉 및 관리, 안내사항 전달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집 주소, 성별, 사진, 3년 이내 마을활동 경험, 직업, 사진·영상 및 음성정보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로부터 임기 만료 후 2년까지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주민자치회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정보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1호서식]

(　　동) 자치회관 반기별 운영결과 보고서

(　　년　월 ～ 월)

□ 프로그램 및 강사 운영현황 (단위 : 명)

프로그램 수	강좌 수	연 인 원 (1일 평균)	강 사 수		
			계	전문강사	자원봉사
		()			

※ 프로그램 수, 강좌 수 및 강사 수는 분기평균으로 기재
연인원= 1일 평균인원(=매주 수강인원의 합계/매주 수강일수)× 년 수강일수(=365일-비수강일수)

□ 수강료 징수 및 지출현황 (단위 : 원)

구 분	수 입 액		지 출 내 역				잔 액
	이월액	하반기 수입액	계	강사료	물품구입	기 타	(. 현재)
계							

□ 주민자치회 위원 현황 (총 인원 명 - 남 , 여) (단위 : 명)

○ 직종별

구 분	계	자영업	통반장	직능 단체	주부	회사원	전문가	비영리 민간단체	기타
총 계									

○ 분야별

구 분	계	교육계	언론계	문화체육 예 술 계	사 회 복지계	종교계	관계	경제계	기타
총 계									

※ 총 인원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

※ 직종별, 분야별(주민자치회 위원 수) 계는 동일하여야 함.

□ 프로그램 운영현황

프로그램명	수강인원	운영장소	운영기간	강사	비 고
	계: / 남: 여:				
총 개 강좌	명(남: 여:)				

□ 수강료 집행현황 (단위 : 원)

구 분	지 출		수 입		잔액	비 고
	지출액	지출내역	수입액	수입내역		
전분기이월						
/ 분기						
/ 분기						
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 칙
제2조(위원의 모집 등) 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모집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위원 신청서·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제2조(위원의 모집 등) ---------- ---------- ---------- ---------- ---------- ----------위원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1.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삭 제>
2.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삭 제>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7조의2

제1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이 위촉한다.

⑤ 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⑥ 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14.]

[시행일: 2026. 10. 15.] 제17조의2

의 견 제 출 서

예 고 내 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조회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638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 개정으로 청소년 육성위원회 명칭 변칭 및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청소년 관련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정책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9조)

나. 청소년정책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 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아동청소년과장, 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 : 02-2116-0577, FAX : 02-2116-4717, email : starami@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 개정으로 청소년 육성위원회 명칭 변칭 및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청소년 관련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정책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9조)

나. 청소년정책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 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3) 규제사전심사 : 대상아님

4) 위원회 관련 사전협의 : 완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대상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 증진 및 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시행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겪을 수 있는 성별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에게 최대한의 유익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청소년 육성정책

제4조(청소년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3.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4.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5.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대안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
2.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5.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6. 청소년의 올바른 성지식, 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청소년의 날) ① 구청장은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구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을 지정할 수 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청소년 정책위원회 구성

제9조(청소년정책위원회 설치)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

음 각 호로 한다.

1. 청소년육성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자문
2. 청소년육성 관련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자문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자문
4. 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자문
5. 지역청소년육성·보호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6.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및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7.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자문
8. 기타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소관 국장,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생활교육과장, 노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2.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실적이 있는 청소년

5.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담당 소속 과장으로 한다.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3. 「아동복지법」 제17조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12조(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등 범죄와 연루된 경우와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및 의사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청소년보호감시단) ① 위원회에 청소년유해업소 및 안전위해업소 등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감시 및 계도 등을 위하여 청소년보호감시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소년보호감시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경비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제11조(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Ⅰ.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해당 개정안은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추가 비용이 소용될 가능성이 없음

4. 작성자

○ 아동청소년과 박정숙(02-2116-0577)

의 견 제 출 서

예 고 내 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639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노 원 구 청 장

1. 폐지이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를 해당 조례의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별도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아동청소년과장, 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 : 02-2116-0577, FAX : 02-2116-4717, email : starami@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를 해당 조례의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별도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부패영향평가 : 제외대상

2) 성별영향평가 : 제외대상

3) 규제사전심사 : 대상아님

4) 위원회 관련 사전협의 : 대상아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대상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제11조(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의 견 제 출 서

예 고 내 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대한 의견조회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 - 1642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30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노 원 구 청 장

1. 안 건 명

연번	안건명	주요내용
1	**조 례 안**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 징수과)	**1. 개정이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과장급을 제외하여 실무 성과 중심의 취지를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신설(안 제2조제3항) 나. 징수포상금의 대상에 과장급(5급 공무원) 제외(안 제2조제4항) 다. 위원회 임기 1년→2년 변경 및 연임제한 규정 신설(안 제5조제4항) 라. 위원장의 업무 대행 및 위원 수당 지급 규정 보완 (안 제5조제10항, 제11항)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2	**조 례 안** □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소관부서 : 아동청소년과)	**1. 개정이유**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시설 현황을 정비하고 청소년시설 사용료에 관한 조항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수정(안 제1조) 나. 근거 법령 추가(안 제 2조) ⇒ 진로교육법에 따른 위임 근거 규정 정비 다. 사용료 반환 기준 정비(안 제8조)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반환기준 정비 라. 청소년시설 ‘상상이룸센터’ 기능 규정 수정(안 별표 1) ⇒ 진로교육법에 따른 센터 정식 명칭 사용 마. 청소년시설 ‘노원구청소년안전망통합지원센터’ 추가(안 별표 1) 바.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좌 강습료 반환 기준 삭제(안 별표 3)

연번	안건명	주요내용
3	**조 례 안** □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소관부서 : 아동청소년과)	**1. 제안이유**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하고,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규정 명확화(안 제2조) 나.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안 제3조) 다. 청소년지도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조 례 안** □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 청년정책과)	**1. 제안이유**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법체계의 일관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과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5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5	**조 례 안**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소관부서 : 안전도시과)	**1.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소통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책본부장 부재 시 직무대행 순서 명확화(안 제17조제3항) 나.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신설(안 제17조의2) 다. 통합지원본부의 피해자·가족 지원 및 소통 기능을 명시하고, 전담팀 및 통합 운영 근거 마련(안 제27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연번	안건명	주요내용
6	**조 례 안**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 녹색환경과)	**1. 제안이유** 전기자동차 열폭주로 인한 화재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화재 확산 위험 환경 및 피난시설과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인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 구역 설치 시 가연성·인화성 물질 및 발전기실·전기실 등과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권고함(안 제6조제5호) 나. 관계인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 구역 설치 시 피난시설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고함(안 제6조제6호)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7	**승 인 안**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건 (소관부서 : 재무과)	**1. 제안이유** 2025회계연도의 결산을 확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25회계연도 결산서에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함. **2. 주요내용** 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나. 2025회계연도 재무결산 총괄 다.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
8	**승 인 안** □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소관부서 : 재무과)	**1. 제안이유** 2025회계연도의 기금 결산을 확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거 2025회계연도 결산서에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함. **2. 주요내용** 가. 2025회계연도 현재 설차관리하고 있는 기금 조성 총괄내역
9	**승 인 안** □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소관부서 : 재무과)	**1. 제안이유** 2025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예비비 지출 내역을 첨부하여 승인 요청함. **2. 주요내용** 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

연번	안건명	주요내용
10	**동 의 안** □ 2027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소관부서 : 문화도시과)	**1. 제안이유**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노원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앞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나. 출연금 범위 - 출연(예정)금 : 6,546백만원
11	**동 의 안** □ 2027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소관부서 : 지역경제과)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14.05.28. 개정, '16회계연도부터 적용)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나. 출연금 범위 - 출연(예정)금 : 1억5천만원
12	**동 의 안** □ 2027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소관부서 : 재산세과)	**1. 제안이유** 가.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함으로써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고 지방세 정책의 선진화와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출연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 나. 출연금 범위 - 출연(예정)금 : 12,683천원

연번	안건명	주요내용
13	동 의 안 □ 2027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	1. 제안이유 가.『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구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나. 2027년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0조 나. 출연금 범위 - 출연(예정)금 : 474,554천원
14	동 의 안 □ 2027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소관부서 : 녹색환경과)	1. 제안이유 가. 노원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 보장, 지역 환경 정책 개발 및 거버넌스 구축, 환경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노원구 출연기관인 (재)노원환경재단을 운영하고자 함 나.「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출연 동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0조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 나. 출연금 범위 - 출연(예정)금 : 1,210,433천원

2. 공고방법 : 노원구 홈페이지, 구보 및 게시판

3.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에 비치함. 끝.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664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판단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노 원 구 청 장

1. 제정이유

가. 「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을 위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

나. 이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아동학대 사례판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적정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2조)

다. 위원회의 구성 (안 제3조)

라. 위원의 임기(안 제4조)

마.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 (안 제5조, 안 제6조)

바. 비밀준수 및 간사 (안 제7조, 안 제8조)

사. 수당 등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노해로 437)

○ 전 화 : 02-2116-4426

○ 팩 스 : 02-2116-4664

○ 전자우편 : ku2727@nowon.go.kr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을 위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

나. 이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아동학대 사례판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적정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2조)

다. 위원회의 구성 (안 제3조)

라. 위원의 임기(안 제4조)

마.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 (안 제5조, 안 제6조)

바. 비밀준수 및 간사 (안 제7조, 안 제8조)

사. 수당 등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3) 규제사전심사 : 해당없음

4) 위원회 관련 사전협의 : 완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 대상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아동복지법」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 사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아동학대 사례의 아동학대 여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노원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씩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4.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

라.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의 종사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학대 사례판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28.>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20. 4. 7., 2026. 2. 3.>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상담·조사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이하 “아동학대사례판단”이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신설 2020. 4. 7.>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20. 4. 7.>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26. 2. 3.>

⑦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9. 1. 15., 2020. 4. 7., 2026. 2. 3.>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⑧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0. 4. 7., 2020. 12. 29., 2026. 2. 3.>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3항 각 호의 업무

2. 보장원의 장: 제7항 각 호의 업무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제46조제2항 각 호의 업무

[별첨 2]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조의2(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이하 “사례판단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례판단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한다.

1. 시·도 사례판단위원회: 시·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군·구 사례판단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사례판단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4.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

라.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사례판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사례판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판단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 견 제 출 서

예 고 내 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대한 의견조회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인 사

노 원 구 (발령 제254호)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 속	직 급
1	강 다 솜	지 방 행 정 서 기 보 에 임 함 문화도시행정국 민원여권과 근무를 명함	신	규
2	김 건 우	지 방 행 정 서 기 보 에 임 함 문화도시행정국 민원여권과 근무를 명함	신	규
3	차 지 나	지 방 행 정 서 기 보 에 임 함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근무를 명함	신	규
4	김 가 을	지방사회복지서기보시보에 임함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근무를 명함	신	규
5	임 다 현	지방사회복지서기보시보에 임함 주민복지국 생활복지과 근무를 명함	신	규
6	송 보 해	지 방 행 정 서 기 보 에 임 함 주민복지국 통합돌봄과에 명함	신	규
7	박 송 이	지 방 행 정 서 기 보 에 임 함 미래교육국 미래교육과 근무를 명함	신	규
8	유 지 은	지 방 행 정 서 기 보 시 보 에 임 함 미래교육국 미래교육과 근무를 명함	신	규
9	정 채 은	지 방 행 정 서 기 보 시 보 에 임 함 안전교통건설국 안전도시과 근무를 명함	신	규
10	조 은 채	지 방 행 정 서 기 보 에 임 함 안전교통건설국 교통지도과 근무를 명함	신	규
11	천 수 림	지 방 행 정 서 기 보 에 임 함 힐링도시국 푸른도시과 근무를 명함	신	규
12	유 소 희	지 방 행 정 서 기 보 에 임 함 힐링도시국 여가도시과 근무를 명함	신	규
13	박 주 희	지 방 행 정 서 기 보 에 임 함 힐링도시국 여가생활과 근무를 명함	신	규
14	소 이 준	지 방 행 정 서 기 보 에 임 함 탄소중립국 탄소중립도시과 근무를 명함	신	규
15	김 진 영	지 방 행 정 서 기 보 에 임 함 탄소중립국 녹색환경과 근무를 명함	신	규
16	김 태 희	지 방 행 정 서 기 보 시 보 에 임 함 탄소중립국 자원순환과 근무를 명함	신	규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 속	직 급
17	정 유 희	지 방 행 정 서 기 보 에 임 함 보 건 소 의 약 과 근 무 를 명 함	신	규
18	소 혜 정	지 방 행 정 서 기 보 시 보 에 임 함 월 계 1 동 근 무 를 명 함	신	규
19	김 지 석	지 방 사 회 복 지 서 기 보 시 보 에 임 함 월 계 1 동 근 무 를 명 함	신	규
20	이 영 서	지 방 행 정 서 기 보 시 보 에 임 함 월 계 3 동 근 무 를 명 함	신	규
21	권 선 자	지 방 사 회 복 지 서 기 보 에 임 함 월 계 3 동 근 무 를 명 함	신	규
22	신 우 석	지 방 행 정 서 기 보 에 임 함 공 릉 1 동 근 무 를 명 함	신	규
23	문 미 경	지 방 사 회 복 지 서 기 보 시 보 에 임 함 공 릉 1 동 근 무 를 명 함	신	규
24	유 승 민	지 방 사 회 복 지 서 기 보 에 임 함 하 계 2 동 근 무 를 명 함	신	규
25	이 한 주	지 방 사 회 복 지 서 기 보 시 보 에 임 함 중 계 본 동 근 무 를 명 함	신	규
26	김 영 진	지 방 행 정 서 기 보 시 보 에 임 함 중 계 1 동 근 무 를 명 함	신	규
27	송 철 영	지 방 행 정 서 기 보 에 임 함 중 계 1 동 근 무 를 명 함	신	규
28	이 도 연	지 방 행 정 서 기 보 에 임 함 중 계 2 · 3 동 근 무 를 명 함	신	규
29	반 동 욱	지 방 사 회 복 지 서 기 보 시 보 에 임 함 중 계 2 · 3 동 근 무 를 명 함	신	규
30	김 지 혜	지 방 행 정 서 기 보 에 임 함 상 계 1 동 근 무 를 명 함	신	규
31	김 해 민	지 방 행 정 서 기 보 에 임 함 상 계 1 동 근 무 를 명 함	신	규
32	허 옥	지 방 사 회 복 지 서 기 보 에 임 함 상 계 2 동 근 무 를 명 함	신	규
33	윤 초 희	지 방 행 정 서 기 보 에 임 함 상 계 5 동 근 무 를 명 함	신	규
34	안 도 현	지 방 행 정 서 기 보 에 임 함 상 계 6 · 7 동 근 무 를 명 함	신	규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 속	직 급
35	조 하 영	지 방 행 정 서 기 보 에 임 함 상 계 8 동 근 무 를 명 함	신	규
36	이 윤 호	지 방 행 정 서 기 보 에 임 함 상 계 9 동 근 무 를 명 함	신	규
37	김 유 빈	지 방 행 정 서 기 보 에 임 함 상 계 1 0 동 근 무 를 명 함	신	규
38	정 영 진	지 방 행 정 서 기 보 에 임 함 상 계 1 0 동 근 무 를 명 함	신	규

2026. 9. 26.字

노 원 구 (발령 제273호)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 속	직 급
1	유 용 상	원 에 의 하 여 그 직 을 면 함	문화도시행정국	지 방 운 전 주 사

2026. 10. 1.字.

노 원 구 (발령 제274호)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 속	직 급
1	문 재 희	원 에 의 하 여 그 직 을 면 함 (근무기간 : 2026. 5. 1. ~ 2026. 9. 30.)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	한 상 원	원 에 의 하 여 그 직 을 면 함 (근무기간 : 2026. 5. 1. ~ 2026. 9. 30.)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3	장 유 주	근무기간 만료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근무기간 : 2021. 10. 1. ~ 2026. 9. 30.)	보 건 소 건강증진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4	김 정 윤	복 직 을 명 함 근무기간 만료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근무기간 : 2023. 10. 1. ~ 2026. 9. 30.)	보 건 소 건강증진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5	안 성 미	복 직 을 명 함 근무기간 만료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근무기간 : 2024. 10. 1. ~ 2026. 9. 30.)	보 건 소 월계보건지소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6	박 미 선	근무기간 만료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근무기간 : 2025. 10. 1. ~ 2026. 9. 30.)	보 건 소 월계보건지소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026. 10. 1.字.

노 원 구 (발령 제275호)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 속	직 급
1	백 성 진	근무기간 만료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근무기간 : 2023. 10. 4. ~ 2026. 10. 3.)	힐링도시국 푸른도시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2026. 10. 4.字.

노 원 구 (발령 제276호)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 속	직 급
1	임한별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홍보사진 총괄 촬영 요원)에 임함 미디어홍보담당관 근무를 명함 (근무기간 : 2026.10.1.~2027.9.30., 주35시간)	신	규
2	김미숙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요원)에 임함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근무를 명함 (근무기간 : 2026.10.1.~2027.4.30., 주35시간)	신	규
3	정민우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공공분야 드론산업 활성화 요원)에 임함 안전교통건설국 안전도시과 근무를 명함 (근무기간 : 2026.10.1.~2027.9.30., 주35시간)	신	규
4	유용상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산림재난대응단 요원)에 임함 힐링도시국 푸른도시과 근무를 명함 (근무기간 : 2026.10.1.~2027.9.30., 주35시간)	신	규
5	정영환	임기제지방시설주사(공공디자인 팀장)에 임함 힐링도시국 도시경관과 근무를 명함 (근무기간 : 2026.10.1.~2027.9.30., 주40시간)	신	규
6	김상조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자전거문화센터 운영 요원)에 임함 탄소중립국 탄소중립도시과 근무를 명함 (근무기간 : 2026.10.1.~2027.9.30., 주35시간)	신	규
7	장유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중계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 요원)에 임함 보건소 건강증진과 근무를 명함 (근무기간 : 2026.10.1.~2027.9.30., 주35시간)	신	규
8	전혜진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치과위생사)에 임함 보건소 월계보건지소 근무를 명함 (근무기간 : 2026.10.1.~2027.9.30., 주35시간)	신	규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 속	직 급
9	이경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노원전통문화체험관 다완재 관장)에 임함 문화도시행정국 문화도시과 근무를 명함 (근무기간 연장 : 2026.10.1.~2027.9.30., 주35시간)	문화도시행정국 문화도시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10	양현옥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 요원)에 임함 미래교육국 아동청소년과 근무를 명함 (근무기간 연장 : 2026.10.1.~2027.9.30., 주35시간)	미래교육국 아동청소년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11	김이레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아동보호전담 요원)에 임함 미래교육국 아동청소년과 근무를 명함 (근무기간 연장 : 2026.10.1.~2027.9.30., 주35시간)	미래교육국 아동청소년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2	김나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기차카페 운영 요원)에 임함 힐링도시국 여가도시과 근무를 명함 (근무기간 연장 : 2026.10.1.~2027.9.30., 주35시간)	힐링도시국 여가도시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13	김성수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기차카페 운영 요원)에 임함 힐링도시국 여가도시과 근무를 명함 (근무기간 연장 : 2026.10.1.~2027.9.30., 주35시간)	힐링도시국 여가도시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14	조예정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기차카페 운영 요원)에 임함 힐링도시국 여가도시과 근무를 명함 (근무기간 연장 : 2026.10.1.~2027.9.30., 주35시간)	힐링도시국 여가도시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5	정구미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 요원)에 임함 보건소 마들보건지소 근무를 명함 (근무기간 연장 : 2026.10.1.~2027.9.30., 주35시간)	보건소 마들보건지소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2026. 10. 1.字.

노 원 구 (발령 제277호)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 속	직 급
1	구승현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무단투기 단속원)에 임함 탄소중립국 자원순환과 근무를 명함 (근무기간 연장 : 2026.10.10.~2027.10.9., 주30시간)	탄소중립국 자원순환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	김미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무단투기 단속원)에 임함 탄소중립국 자원순환과 근무를 명함 (근무기간 연장 : 2026.10.10.~2027.10.9., 주30시간)	탄소중립국 자원순환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 속	직 급
3	김태훈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무단투기 단속원)에 임함 탄소중립국 자원순환과 근무를 명함 (근무기간 연장 : 2026.10.10.~2027.10.9., 주30시간)	탄소중립국 자원순환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4	김흥래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무단투기 단속원)에 임함 탄소중립국 자원순환과 근무를 명함 (근무기간 연장 : 2026.10.10.~2027.10.9., 주30시간)	탄소중립국 자원순환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5	박영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무단투기 단속원)에 임함 탄소중립국 자원순환과 근무를 명함 (근무기간 연장 : 2026.10.10.~2027.10.9., 주30시간)	탄소중립국 자원순환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6	안준오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무단투기 단속원)에 임함 탄소중립국 자원순환과 근무를 명함 (근무기간 연장 : 2026.10.10.~2027.10.9., 주30시간)	탄소중립국 자원순환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7	양인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무단투기 단속원)에 임함 탄소중립국 자원순환과 근무를 명함 (근무기간 연장 : 2026.10.10.~2027.10.9., 주30시간)	탄소중립국 자원순환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8	탁병운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무단투기 단속원)에 임함 탄소중립국 자원순환과 근무를 명함 (근무기간 연장 : 2026.10.10.~2027.10.9., 주30시간)	탄소중립국 자원순환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026. 10. 10.字.

노 원 구 (발령 제278호)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 속	직 급
1	정 명 숙	지방보건사무관에 임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직을 면함(퇴직일 : 2026. 9. 30.)	보건소 보건위생과	지방보건 주 사
2	박 현 숙	지방보건사무관에 임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직을 면함(퇴직일 : 2026. 9. 30.)	보건소 의 약 과	지방보건 주 사
3	최 문 경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직을 면함(퇴직일 : 2026. 9. 30.)	중계4동	지방행정 주 사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 속	직 급
4	임 진 희	지 방 행 정 사 무 관 에 임 함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직을 면함(퇴직일 : 2026. 9. 30.)	상 계 1 동	지 방 세 무 주 사

2026. 9. 30.字.

노 원 구 (발령 제279호)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 속	직 급
1	최 지 원	지 방 간 호 주 사 보 에 임 함	공 릉 1 동	지 방 간 호 서 기
2	공 지 현	지 방 사 회 복 지 서 기 에 임 함	중 계 본 동	지방사회복지 서 기 보
3	백 민 지	지 방 사 회 복 지 서 기 에 임 함	중 계 4 동	지방사회복지 서 기 보

2026. 10. 1.字.

노 원 구 (발령 제281호)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 속	직 급
1	권 유 진	7급(지방행정주사보) 대우로 선발함	기획재정국 재 무 과	지 방 행 정 서 기
2	김 유 진	7급(지방사회복지주사보) 대우로 선발함	주민복지국 생활복지과	지방사회복지 서 기
3	박 지 한	6급(지방행정주사) 대우로 선발함	도시계획국 공동주택지원과	지 방 행 정 주 사 보
4	이 승 헌	8급(지방운전서기) 대우로 선발함	보 건 소 보건위생과	지 방 운 전 서 기 보
5	심 세 진	6급(지방사회복지주사) 대우로 선발함	월 계 3 동	지방사회복지 주 사 보
6	김 태 균	7급(지방행정주사보) 대우로 선발함	중 계 4 동	지 방 행 정 서 기

2026. 10. 1.字.